

의안번호	제 228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4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연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수범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및 공공기관 범위 (안 제2조, 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은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안 제4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안 제6조)
-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부여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및 도 소속 행정기관
2. 도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

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를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②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의한다.
-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용자 및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용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 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 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